의 안 번 호	1250	【울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】 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제 출 일 자 : 2016. 7. 5.(화)

나. 제 출 자 : 김경환 의원 외 10명

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6. 7. 8.(금)

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6. 7. 13.(수)

2. 제안이유

❍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·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❍ 조례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(안 제1조)

❍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
❍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❍ 새마을운동조직의 비용지원 신청 및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❍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4. 관련법령

❍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 조례안은

-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·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
○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〈 관 계 법 령 〉

□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(약칭 : 새마을조직법)

[시행 2014.11.19.] [법률 제12844호, 2014.11.19., 타법개정]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·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·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[전문개정 2011.5.30.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새마을운동조직"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,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, 직장·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, 새마을문고중앙회,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.[전문개정 2011.5.30.]

제3조(출연금의 지급 등) ① 국가나 **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**

② 개인·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재원(財源)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.

③ 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, 보조금, 기부금의 사용·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11.5.30.]

제8조의2(새마을의 날) ①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정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새마을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2011.3.8.]

제9조(예산서 등의 제출) 새마을운동조직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[전문개정 2011.5.30.]

제10조(결산보고 등) 새마을운동조직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·세출 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 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[전문개정 2011.5.30.]